

III. 비거주자 등에 대한 각종 확인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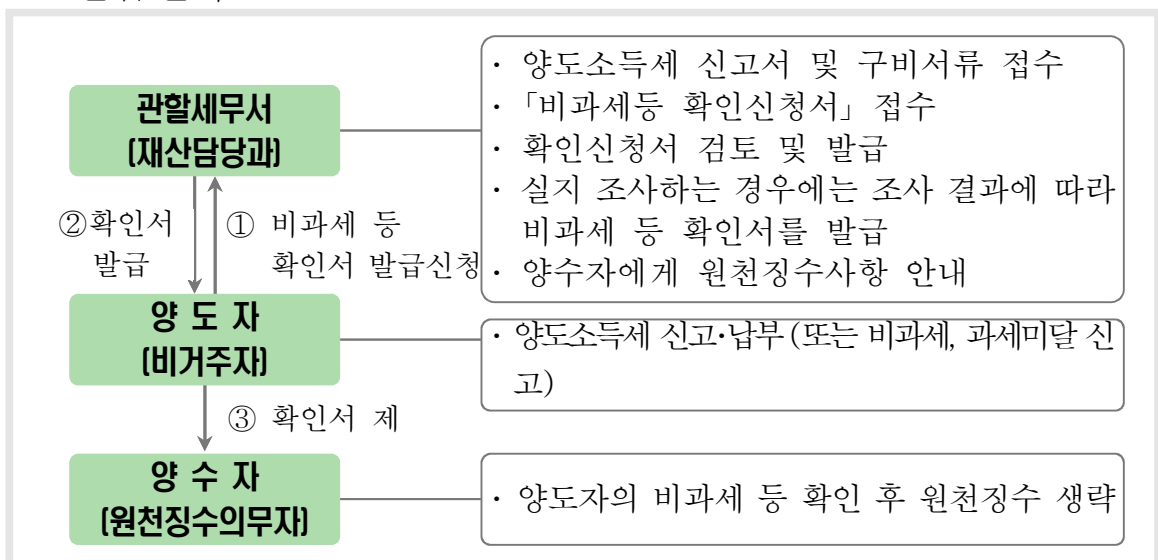
□ 「비과세 등 확인서」 발급

Q1.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목적은?

- A.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·납부하였거나, 비과세 또는 과세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-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.

Q2.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?

- A. 양도자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하며,
- 다만,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에 의해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
 -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(비과세·과세 미달 신고 포함)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
 - 발급절차



Q3.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대상은 누구죠?

A. 양도시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거나,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동 확인서 발급(소규칙 별지 제29호의 3서식)을 신청한 비거주자입니다.

Q4.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기간은?

A.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,
○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□ 「재외국민 인감경유」

Q1. 재외국민 인감경유가 뭐죠?

A. 인감증명법 시행령 §13③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.

Q2. 재외국민 인감경유 방법은?

A. 소유권이전등기부부분에 첨부되는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, 세무서장의 확인(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)을 받아야 합니다.

○ '19년 부동산등기규칙 §61③ 개정으로 '19.1.1.부터 재외국민 인감 경유 절차 대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서 인감증명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.

□ 「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」 발급

Q1.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은 어떤 경우 누가 하나요?

- A.** 재외동포가 국내원화예금·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- 대상은 재외동포 중 국내원화 예금·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이며,
 - 발급대상 금액은 반출자금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고,
 -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.

□ 「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」 발급

Q1.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누가 어떻게 발급 받나요?

- A.**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대금 (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)을 국외로 반출시 매각자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-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이며,
 - 발급대상금액은 신고된 양도가액 범위 내이고,
 -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4-2호 서식 또는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.

□ 「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」 발급

Q1.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

A. 해외이주자(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함)가 반출 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- 발급대상은 해외이주자(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포함)이며,
- 발급 대상 금액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액 미화 10 만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고
-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.